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06년 10월 25일(수) 15:00~18:00, Palais Wilson
- 2차 심의 : 2006년 10월 26일(목) 10:00~13:00, Palais Wilson

◎ 정부대표단: 18인 (단장: 김종훈 인권국장)

- △ 법무부 : 인권국 인권정책과 박민정 사무관, 인권국 인권옹호와 이문한 검사,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강지식 검사, 보호국 소년2과 이영면 사무관, 교정국 교정기획과 최제영 사무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 김병철 사무관
- △ 외교통상부 : 인권사회과 장현철 사무관
- △ 국방부 : 인권팀 이성주 인권팀장, 임시정 법무관
- △ 행정자치부 : 공무원단체복무팀 이재용 팀장, 이화진 전문위원
- △ 노동부 : 국제노동정책팀 정형우 팀장, 여성고용팀 이성용 서기관, 국제협력팀 김영미 사무관
- △ 국정원 : 김영진 서기관, 이상은 사무관
- △ 경찰청 : 인권보호센터 권건아 경위
- △ 청소년위원회 : 참여인권팀 이은옥 사무관
- △ 주 제네바 대표부 : 이상용 참사관, 임훈민 참사관, 백범흠 서기관 합류

◎ 민간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사무총장, 오재창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문정호 간사), 전국 공무원 노조 (윤용호 부위원장, 김석 국제부장)

◎ 자유권위원회 위원 중 정부보고서 심의시 참석한 위원 명단

- △ Ms. Christine CHANET (Chairperson) - France
- △ Mr. Nisuke ANDO - Japan
- △ Mr. Prafullachandra Natwarlal BHAGWATI - India
- △ Mr. Abdelfattah AMOR - Tunisia
- △ Ms. Ruth WEDGWOOD - USA
- △ Mr. Michael O'FLAHERTY - Ireland
- △ Sir Nigel RODLEY - United Kingdom
- △ Mr. Ivan SHEARER - Australia
- △ Mr. Hipolito Solari Yrigoyen - Argentina

법무부 김종훈 인권정책국장(정부대표단 단장) 발언

1. 서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거하여 2005년 2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규약 이행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결집된 노력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함으로써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설적 비판 및 조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국가인권위 및 NGO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UN에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라는 새로운 인권기구가 탄생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인권이사회 신설을 계기로 세계 인류가 인권이라는 높은 가치를 향하여 뜻을 모아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인권이사회 위원국으로서 인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에 관한 규약입니다. 본 규약이 발효된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랜 시간동안 동 규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규약의 정신과 원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 심의가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권고와 지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3차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2005년 2월 3차 보고서 제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노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차 정부보고서의 내용 및 보고서 제출 이후 상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3차 정부보고서는 2차보고서 심의가 있었던 1999년부터 2004. 5.까지 기간동안 우리 정부가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각종 구체적인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조문 순서에 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차 보고서의 내용이나, 위 기간 전후의 내용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차 보고서 제출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각 분야별 인권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전담기구의 설치 및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인권기구를 위한 파리원칙’에 따라 2001. 11. 25. 인권전담 독립국가기구로 출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정책·법령 권고 및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권고, 광범위한 인권실태조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적 제도와 관행 개선 노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 인권교육·홍보 등 독립국가기구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 2006년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인권국을 설치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제도개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그에 대한 구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로부터 수립을 권고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최초로 향후 5년간의 정부가 나아갈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 구치감, 보호소, 대용감방 등 전국의 구금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관행이나 제도,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그 외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도 인권전담팀을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자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

법무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 1.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체포 후 즉시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전피의자신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 및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대폭 확대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구속, 불구속을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 신문 내지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다양한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재판과정에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허용하였으며,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시작 및 종료 시각과 조사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수사과정 기록 제도’를 신설하여 신문·조사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2006. 6. 전면 개정하여 한 단계 높은 인권수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접견·교통권의 철저한 보장, 조사시 가족 참관, 신뢰관계인의 동석 범위를 확대,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제2차 피해 방지, 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의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정책심의기구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원상회복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피해자의 사법절차에의 참여 확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권

2005년 3월,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제도 구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에 1996년부터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목표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공직에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참여목표율' 제도를 설정하여 여성위원 비율이 1993년 6.9%에서 2005년 32.2%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상 남녀차별은 여성 중심의 가사·육아부담이라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육아정책 개선 등과 함께 기업에 대하여 여성고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하여 여성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4. 3. 22.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성매매 알선행위·인신매매 등을 중점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용시설 처우 개선

법무부는 2004. 6.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자 징벌 및 계구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은 징벌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징벌기간 중 수용자 기본권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계구사용 요건을 엄격화하고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부 교정전문가와 함께 외국사례 및 판례, 교정행정 실태, 수용자 불만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용자들의 서신검열 폐지 등 외부교통권 강화, 정기적 건강검진 의무화 등 건강권 강화, 수용자 개별처우 강화,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배려 등 수용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2006. 4.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 3. 교도관의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수감시설내의 여성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성폭력 감시단을 발족시켜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분류심사상담실에 투명유리문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 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적용 등을 통해 현재는 과거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사상전향제 및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한 것은 3차 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결사의 자유 확대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 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다만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및 업무의 공공성, 국가기능의 계속성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확대 등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2년까지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인정율이 저조하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향적인 난민정책을 시행하여 2003년 12명, 2004년 18명, 2005년 9명, 2006년 9월까지 총 50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으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 이의신청기간 연장,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난민협약상의 지위 및 처우 보장,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인도적 지위 부여,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및 난민인정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이행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당초 가입을 유보하였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개인통보 결정을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비준 동의안이 2006. 9. 29.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내 가입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22조 유보철회를 위한 국내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결론

의장님,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법제와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권이사회 위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며, 국제사회 및 국내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재의 인권 수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가치에 큰 역점을 두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이 살아 숨쉬는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약과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헌법적, 법적 틀(framework);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2조)

1.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본 규약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규약과 국내법의 상충 시 무엇이 우선하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하십시오. 규약이 재판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주십시오.

▷ 답변: 외교부 장현철 사무관

● 규약과 국내법의 효력 관련,

- 대한민국 법률은 제정단계에서 법제처 심사와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규약과의 상충 여부 등이 검토되므로 국제인권규약과 상충하는 국내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만일 규약과 국내법의 상충이 있을 경우, 국내법을 국제규약기준에 부합시키도록 한다(예를 들어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국회 심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규약의 원용가능성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원칙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은 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주로 관련 헌법조항 및 법률과 함께 위반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들과 관련해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권위에 의해 이루어진 권고, 기소 및 수사 요청에 대해 당사국이 행한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기보고서 52항). 2004년과 2005년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보가 있습니까?

▷ 답변: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

- 국가인권위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고발·수사의뢰된 진정사건 24건 중 7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12건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불기소되었고 나머지 5건은 수사 중이다.
- 2001년부터 2006. 6.까지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총 164건의 권고 중 114건이 전부 혹은 일부 수용되었으며(약 70%), 수용이 거부된 것은 13건(7%)에 지나지 않는다.
- 2001. 11.부터 2006. 8. 31.까지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등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	완전수용	일부수용	대체방안 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율 (%)
법률구조요청	6	5	0	0	0	1	100.0
징계권고	27	7	15	2	1	2	96.0
긴급구제	5	4	0	0	0	1	100.0
권 고 (합의권고포함)	378	237	3	2	5	131	98.0
합 계	416	253	18	4	6	135	97.9

3. 대한민국은 규약의 유보조항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재고한 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내 법 체계가 어떤 측면에서 협약의 14조 5항과 양립할 수 없는지에 관해 기술해 주십시오. 당사국은 14조 5항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보고서 20항: 이전 최종견해 20항)

▷ 답변: 외교부 장현철 사무관

- 현재 정부는 협약 제14조 제5항의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하의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헌법 제110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 비상계엄은 규약 제4조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시 일정 범죄에 대한 단심제를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약과 상충된다고 하기 어려워 관련 국내법 개정보다는 유보 철회를 고려중에 있다.

4.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통보제출자에게 추가적인 이의나 금전 배상을 위한 소송과 같은 국내소송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구제권고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하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위원회의 이러한 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왔는지 제시하십시오. (정기보고서 17-19항; 이전 최종견해 20항)

▷ 답변: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

-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UN 규약위원회의 권고는 기존 국내확정판결과의 배치 문제로 이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및 규약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테러 조치들 및 규약보장 존중

5. 당사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대테러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특히 테러리즘의 정의와 더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대테러 관련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특히 수색과 전화도청, 대화 도청 및 국외 추방과 관련한 규정들로 이들에 대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답변: 외교부 장현철 사무관

- 2004. 6. 17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으로 3개의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현재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 3개의 법률안은 ① 국가對테러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테러대책회의’ 구성·운영, ② 테러위험인물 추적, 테러정보 통합 등을 위한 ‘대테러센터’ 구성·운영, ③ 국민들의 테러위험 지역 여행자제 유도를 위한 테러정보 발령제도, ④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대테러대책, ⑤ 테러관련 중요시설 등 보호 및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군 병력지원, ⑥ 테러로 인한 신체·재산상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현재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법안 3건 모두 수색, 전화·대화감청 및 국외추방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통신비밀 보호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등 및 비차별 원칙들 (2.1조, 3조, 20조, 26조)

6. 당사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기보고서, 31-40항)

▷ 답변: 노동부 이성용 서기관

● 비정규직 근로자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금지 명문화, 차별시정을 위한 준사법적 구제절차 마련,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2006. 8.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07년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5만 4천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한 계약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

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도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이 열악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고용제’(Quota-Levy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민간사업주가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정도·성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2004년부터 의무고용율과 상관없이 장애인 신규 고용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융자 및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7.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마지막 보고 이후 접수된 기소와 유죄선고의 숫자를 포함한 형사 처벌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 폭력 전담 검사를 추가적으로 임명한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82항; 이전 최종견해 11항) 또한 강간에 대한 본 인권이사회에 우려와 관련해 관련 입법 내용, 기소 및 유죄판결 숫자, 선고된 형기 등의 관련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전 최종견해 11항)

▷ 답변: 검찰 강지식 검사

● 가정폭력

-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총 39,467명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었고, 수사를 거쳐 그 중 5,743명이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결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을 부과하고 있다.

- 각급 검찰청에 적절한 수의 가정폭력 전담검사를 배치하여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외부 유관단체 및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구축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강간범죄 관련

- 강간범죄와 관련하여 2004. 4. 1.~2006. 6. 30.까지 20,751명이 입건되고, 9,929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8,216명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사형 1명, 무기징역 25명, 유기징역형 5,728명, 벌금 2,020명, 기타 1,076명)

- 강간의 입법내용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우려와 관련, ① 저항을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또는 저항이 없었다고 하여 반드시 강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② 강간죄의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③ 배우자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규정상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고소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을 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판례는 부부간에는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 강간의 처벌 문제는 법규정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판례의 변경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2003년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에 관한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기 보고서 65 및 330항; 이전 최종견해 10항)**

▷ 답변: 법무부 강지식 검사

- 호주제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 6. 재차 동일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05. 2.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05. 3. 국회는 호주제 폐지 등이 포함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로 인해 입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등 호주와 관련된 모든 조항은 민법에서 삭제되었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거쳐 2008. 1. 1.부터 호주제도가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9. 당사국은 태아 성감별과 여아를 낙태하는 관행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의 성공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안전하지 않은 낙태와 모성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국이 택한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모성 사망의 수준과 의료법(the Medical Treatment Act) 19조 2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들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십시오. (정기보고서 102-103항; 이전 최종견해 10항)

▷ 답변: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

- 여아를 낙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성감별을 하는 행위를 의료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최근 성별에 관한 인식변화, 출산을 저하 등의 원인과 복합되어 태아 성감별 행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관련 정책들이 매우 성공적이라 판단한다.

-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태아 성감별 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4명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의료인 1,547명 중 0.5%이다.

- 정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교육 및 낙태후유증·태아성감별 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성상담을 실시하며, 임신·출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낙태 등의 이유로 인한 모성 사망은 2002년에는 3명, 2003년에는 없다.

10. 2003년에 세워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 계획'하에서 동일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대해 여성이 동등한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정기보고서 90항). 의회와 사법, 입법, 행정을 포함한 고위 공직들은 여성의 참여가 높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국이 이들 분야에서 더욱 평등한 균형을 이루어내는데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성 채용 목표제(women's recruitment target scheme)'의 성공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된 부문에서 이 정책을 재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습니까? (정기보고서 68항; 이전 최종견해 12항)

▷ 답변: 노동부 이성용 서기관

● 여성동등임금 보장

- 정부는 여성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또는 성차별 유발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03년 1,026개 사업장, '04년 1,192개 사업장, '05년 717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06년 1,000여개 사업장을 점검 중에 있다.
- 2006.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공기업 및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고용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은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고위공직 여성진출 확대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참여목표율제도」를 설정하여 1993년 6.9%였던 여성참여율이 2005년 32.2%로 증가하였고,
-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2001년 4.8%였던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은 2004년 7.4%까지 향상되었으며, 2006년까지 10%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 2006. 10.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42/297명), 여성 법관 비율은 16.8%(375/2,221명), 여성 검사 비율은 11.5%(181/1,566명)에 이르고 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와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조와 7조)

11. 2000년과 2002년 사이 수사관들이 임무 수행 중 피의자에 대한 폭력이나 잔혹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제시된 숫자들 이외에,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하십시오.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이러한 행동에 대한 형벌의 유형과 기간은 어떠한가요? 또, 피의자가 아닌 구금자에 대해 행해진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처우에 대해 어떤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배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기보고서 120항; 이전 최종견해 14항)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체포·감금,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 등과 관련하여 기소 및 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년도	기소인원		선고내용						
			경찰청				대검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징역	무죄	벌금	선고 유예	징역	무죄	선고 유예
2002	11	9	8	-	-	2	5	2	-
2003	4	-	3	-	-	4	-	-	-
2004	14	-	1	-	-	5	-	-	-
2005	8	1	2	-	-	2	-	-	1

-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구금자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거의 없으며(선고유예2건), 다만, 올해 3월 교도관에 의한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을 구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급자 등을 징계하였으며, 가해 교도관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 2002년부터 2006. 7.까지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소송 제기 건수 및 유죄판결 건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피소 건수	처 리 결 과 (피소건수기준)											
		무혐의	죄안됨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선고 유예	징역	금고	구류	조사중	소취하	기타
	417	166	1	1	5	76	2	0	0	0	37	92	37
2006	85	10			1	15					35	17	7
2005	124	52				24	1				2	33	12
2004	85	36	1	1	3	19						20	5
2003	66	34			1	10	1					11	9
2002	57	34				8						11	4

- 공무원의 가혹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450,000,000원(약 466,321달러)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12. 당사국은 보고된 바 있는 검찰 당국의 피의자나 공범의 자백에 대한 높은 의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는 수사관들에게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사국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이전 최종전해 14항)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 2006. 1.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대인적인 수사 대신 과학수사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자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권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문을 받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도록 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강압수사를 방지한다.
- 또 수사기관의 구속·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백이나 부당한 진술증거 수집을 제한한다.
-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자백이 경험법칙에 반하는 등 합리성에 의심이 있거나, 공범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여 자백 편중 수사를 지양하도록 한다.

자유와 개인의 안전 및 수감자의 처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9, 10, 14조)

13. 경찰에 의한 심문 중 변호사와의 상담에 대해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며 어느 시점에 변호사의 참여가 허용됩니까? 형사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규율하는 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은 어떠합니까? (정기 보고서 229-230항)

▷ 답변: 주 제네바 대표부 이상용 참사관

- 현재로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체 지침('피의자등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이다.
- 변호사의 참여시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 변호인의 조사 참여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이나 그 가족, 변호사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공범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14. 현재까지 규약의 9조 3항의 내용과 관련해 당사국이 보인 진척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들이 취해 졌습니까? (정기 보고서 143-145항; 이전 최종견해 13항)

▷ 답변: 주 제네바 대표부 이상용 참사관

-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필요한 것으로 하고, 조건부 석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 1.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 즉,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즉시 피의자를 신문하도록 하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도주 등으로 구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하여 심문한다.
- 법원이 기소 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다양한 조건(출석보증금 납입, 피해 공탁, 출국 금지 서약 등)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석방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다.

15.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개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허용 가능한 기소 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전 최종견해 13항)

▷ 답변: 주 제네바 대표부 이상용 참사관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06. 1. 6.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당사국이 계구사용과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대하여, 또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게 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170-177항). 1999년 행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이 청원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사국은 수감자들이 청원 과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기 보고서 165-169항)

▷ 답변: 법무부 최재영 사무관

● 계구사용, 징벌 관련

-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행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 징벌

- 구체적인 수용자의 규율위반사항을 총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반사항에 따라 4개 단위로 구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징벌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징벌의 부과시에는 징벌혐의자의 연령·성향·규율위반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규율위반행위 후의 정황, 행형성적 등 규율위반행위자의 사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계구사용

- 계구의 경우 수갑과 사슬은 종류별로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달리 정하여 수용자에게 사용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의 계속사용여부를 소장으로 하여금 매일 심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계구사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청원절차 인지

- 수용자의 청원과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입수용자 교육실에 진정·청원에 대한 절차,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입수용자 입소 후 정기적으로 VTR·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진정·청원제기절차, 진정·청원제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교육하며
- 각 수용거실과 작업장·교육장 등에 청원의 취지와 절차, 방법에 관하여 열람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작업장이나 교육장 등에서 수용자가 진정·청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정·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7.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2004년 10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과도한 고립과 제재조치가 행해졌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기관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답변: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

-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계속입원치료 여부에 대해 각 시·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수시로 병원장 또는 시·도 지사에 퇴원요청 또는 처우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보장되어 있다.
- 관할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 관리실태 및 '격리 및 강박지침' 이행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 적발시 정신보건법에 의해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고

-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정신질환자 입소시설) 등에 환자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인권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할 수 있다.

위원들의 추가 질의

(1) Mr. Prafullachandra Natwarlal BHAGWATI (India)

질의목록의 1번부터 5번까지 질의하겠으며 답변해 주면 고맙겠다.

1) 국내법원이 국내법에 대한 국제조약의 우위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시오.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상충시,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데, 조약이 국내법에 인용된 다른 사례들이 있는가?

2) 2000~200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통보의 11사건중 5사건은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고 나머지 6사건은 정부의 규약위반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6사건에 대한 개인통보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을 실효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구제조치와 법을 가지고 있나? 국내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나?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였나? 이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이행에 대한 법의 부재때문인가 아니면 국내법이 그러한 결정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가? 자유권위원회와 그 선택의정서하에서의 결정은 해당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4) 다음은 유보조항인 규약 제14조 5항에 대한 질문이다. 오랫동안 유보를 유지해 왔었는데, 방금 유보조항의 철회가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보는 언제 철회될 것 같나? 유보 철회의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

5)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들의 임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누가 이들을 결정하나? 또한 어떻게 임명이 되는가? 선택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그 기능 및 업무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

6)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 한국정부에 구속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단지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가?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의미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왜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시오

7) 한국정부는 언제 실질적으로 유보를 철회할 것인가?

8) 테러를 방지할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는 규약이 보장된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대표단에 의하면 3개의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였다. 이 법안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혹은 언제 실질적으로 통과될 것인가? 언제 이 법안들이 심의될 것인가? 국민들이 이 법안들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나? 제출된 법안들이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일치하여 전화 및 대화감청, 국외 추방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제정될 것인가?

(2) Mr. NISUKE Ando (Japan) from 6 to 10 (article 213-260 of the government report)

1) 질의항목 6번 관련

정부대표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다. 그 답변에서는 고용의 기간으로 노동자를 구별하였고, 일정기간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고 하였다. 답변에서 약 54,000여명의 단기 계약직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단기간, 장기간 혹은 무기한을 구별하는 시간의 기간은 무엇인가? 이는 고용주가 어떤 이유가 있을시 언제라도 그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인가?

2) 이주노동자 관련,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9조는 인종에 의하여 차별대우받지 않는 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3)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이 사안은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출입국관리 규정이 느슨해 지고 세계 경제가 더욱 더 통합되어 감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 비정규노동자 차원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이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용이해 지고 있다.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국제기업 혹은 마피아 단체들이 있으며 많은 비용을 받고 그들을 선진국 시장에 보낸다. 정부대표단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이러한 대부분의 이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점으로는 그러한 국제기업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4) 성별에 근거한 차별관련하여 두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가족법을 개정하였다. 이제 아이들은 부성이 아닌 모성을 자신의 성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 생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결혼 후에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친구 한명이 나에게 말하길 그것은 한 쪽 측면이고 다른 측면은 가족전통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여성들은 남편의 가족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것이 더 발전된 것이고 더 인도적인 것인가? 가족법에 따라 아이들이 때로는 부성 대신에 모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성을 택하려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5) 국제결혼이 더욱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다.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아이의 국적 선택에 관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모의 국적을 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물론 부의 국적은 모의 국적과 다를 것이다. 이 둘의 충돌시 그 범주는 무엇인지 혹은 어느 행정부나 법원에서 그 아이들의 국적을 결정하는가?

6) 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인중의 출생자 사이의 차별이 있는가? 특히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상속의 방법과 범위간의 차별이 존재하는가?

7) 가정폭력에 관하여

2004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었다. 약 4만건의 위반자가 있고 이 중 약 6천여명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3만 4천여명이 남아있다. 이 사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략의 수치를 제공해 주면 고맙겠다.

쉼터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종종 아내와 때로는 아이들이며,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피하려 한다. 한국내 넓게 위치한 많은 공공 쉼터를 가지고 있으나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활동하나? 만약 한 여성이 쉼터로 옮겨졌다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남편이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부터 그 여성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나?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8) 부부간 강간과 관련하여 정부대표단의 답변에서 부부간 강간으로 인정되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다고 하였다. 부부간 강간은 범죄이다. 그러한 국내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9)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신분증명 시스템을 준비중이라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한국은 가족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를 고치는데 사용되었다. 지금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신분증명 등록 시스템을 계획중인가? 물론 법을 바꾸고 호주제를 폐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회적인 관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 사회 교육 측면에서 이를 바꾸려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제 폐지에 맞추어 관여해 왔고 또 관여한 사회 프로그램 혹은 정부활동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0) 여아 낙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낙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낙태는 가족계획의 일부이다. 내 의미는 큰 어려움 없이 병원에 가서 임산부가 아이를 낙태할 수 있다. 나의 질문은 이러한 낙태의 유형과 유아의 성별감식 후 여아이면 낙태를 하는 것과 구별하기가 때론 어렵다. 이러한 불법적인 낙태와 불법이 아

날지 모르지만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낙태를 하는 것을 구분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가? 이에 관한 조사나 연구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의사들은 때로 그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것이 성별에 근거한 낙태라는 것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낙태라는 것을 확인할 다른 구체적인 조치는 있는가?

11) 남녀고용평등문제에 관하여 나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들중에 어떤 이는 정규직이고 어떤 이는 비정규직이며 또 어떤 이는 합법적이며 어떤 이는 불법적이다. 이 점에서 특정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액정을 위한 플라스틱 틀을 만들거나 그 성분을 제조하는 회사중의 하나인 동아 디지털 회사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유독성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때로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요소에 노출되어 그 결과로 많은 육체적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이 정보는 국제비정부단체중 한 군데서 제공하였다.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한다면 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궁금하다.

12) 물론,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사회적인 관습 혹은 인식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사회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성평등이 이러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인가? 이것은 기본적인 계획이다. 아마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을 실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고 있나? 전체 인구의 고령화로 그리고 많은 여성의 결혼을 때문에 결혼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아이들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법 조항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마도 여성들이 근무중에 자신들의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는 많은 보육시설을 가져야 한다. 물론 남성들 또한 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보육시설 혹은 다른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가?

(3) Ms. Ruth WEDGWOOD (USA)

1)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시 그들의 변호인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질의서 11에 관한 답변으로 정부대표단이 제공한 얼마나 많은 이가 그러한 처우시 기소되었나 하는 점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감사한다. 경찰폭력의 사건을 들여다 보자. 나는 한국에서 조천훈 치사사건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는 걸 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었다는 것이었음을 확신한다. 나의 관심과 경험을 조금만 공유하자면 이것은 마치나에게 그들의 변호인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며, 왜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처럼 보인다.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제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한편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중립적인 자가 거기에 가서 명이나 상처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직도 그러한지 확실하지 않지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정말 큰 유혹이 있을 것이다 오직 심문시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나중에 그 자를 구타한다. 나의 국가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로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실질적인 법적 예외가 존재한다

는 점에 놀란다. 정부대표단의 보고서에 인용되었듯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내 동료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만 부정한 변호인이 있다. 범죄를 조직하는 불량한 변호인이 있다. 사실이다. 그러한 변호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증인에 대한 협박이라는 매우 일반적인 변명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심문하는 동안 변호인이 참여할 때 정부가 그의 참여를 감시함으로써 옹호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손실, 증인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은 검찰이나 경찰의 입회로 반대된다. 그러한 세가지 이유에 대해 나는 꽤 현대적이다. 나는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나 변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 자격있는 변호인을 내보내길 원한다. 훌륭하다! 법원에 가서 법적 대리인을 구해라... 그러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심문시 변호인은 참여해야한다. 명백하게, 설령 누군가 48시간 이내 구금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판사에게 대면하지 않는 구금기간의 연장, 긴급체포는 도움이 된다. 구제조치, 이 또한 나의 경험이지만, 내가 만약 감사원장을 가지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면 어떤 독립된 수사기구를 추천하고 싶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section 1983 조치라고 부른다. 만약 경찰이 사람을 구타를 한다면, 그 경찰은 연금을 잃게 되고, 집을 잃게 된다. 심문시 비디오 녹화는 법정에서 더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기소의 수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감소하고 있고 자격정지로 보이는 많은 수의 선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찰폭력은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가진 고도로 발전한 국가에서 실제 현상이다. 그러나 어떤 이가 경찰일 때, 그는 난폭한 사람들을 다루며 그 자신도 난폭하게 된다.

2) 15번 질문의 기소 전 구속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다. 법원과 대면하기 전에 일반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50일동안의 구금에 대해 약간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금기간이 꽤 길다. 미국 법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기소 전 구속기간이 20일과 10일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다. 내 동료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신속히 법관에게 대면하는 것이 남용의 유혹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3) 감옥에서의 징계조치관련, 심지어 좋은 시설을 갖춘 감옥, 현대식의 감옥에서도 언제나 젊은 검사는 그 감옥에 대해서 말 할때 나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거기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경제적인 필수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울하다. 나는 감옥이라는 곳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중 30.9%가 구금시설과 관련된 것이고 징계의 남용문제로 주장되어진 것이다. 독방구금의 사용, 징계조치로서 독방구금의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1달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교도소장이 여전히 그 기간을 한달, 또 한달, 또 한달, 또 한달....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 감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려한다. 그것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가 6월, 8월, 9월, 10월, 2년동안 독방구금될 수 있으며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없고, 햇빛을 보지 못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고 읽을 자료등도 없다는 것은 결국 그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 영국의 교도소를 예로 들자면, 이는 18세기 혹은 19세기에 발견되는데 웨이커 교도들은 원래 어떤 이를 독방에 구금시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대신에 인내심을 가지고 여성과 대화를 하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채소자들을 쓰레기통 주위로 데려갈 수 있다. 감시에 더하여 힘든 조건은 매우 매우 위험한 현상이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때때로 충분하지 않다. 외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

소관들은 나쁜 행실을 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은 모든 인간은 아마도 해서는 안될 방법으로 그에게 교육시키려는 유혹을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물질적인 계구에 대한 우려점을 공유하고 싶다. 세계 모든 신문들이 오랜 세월동안 이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긴 사슬, 수갑, 안면마스크등 한국의 구금시설에서 그러한 계구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남용될 수 있다. 만약 재소자를 이렇게(행동하면서) 안면마스크를 하고 60일을 감금시킨다? 오 맴소사, 계구의 사용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계구들은 어떠한 고통도 주어서는 안된다. 어떤이가 그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감옥에서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괜찮다. 그를 격리시켜라. 그러나 194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계구를 사용하지는 말아라. 진정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은 재소자 가족구성원들이라 생각한다. 미국에 대해 말을 하자면, 법원에서 감옥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가족구성원이나 인권단체의 참여가 유용하다. 판사가 감옥에 다님으로써 면회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단순히 교도관 자신이 그렇다면 사건은 어려워질 것이다. 매우 제한된 조치를 넘어서 감시원이 없는 장소에 대해서 가정적인 적합한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계구들이 남용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유용적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이며 우호적인 의견으로 나는 솔직히 그것들을 폐지할 것이다.

4) 나의 마지막 문제는 정신병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 종종 자매, 형제, 아들, 딸들을 단념하고 그러므로 교도관이 유혹을 가지게 되는 고립된 시설에서의 유사한 문제이다. 케네디의 긍정적인 조치를 예로 들자면, 병원장에게 대우향상을 위해 청원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방문할 수 있는 조치와 같이 조사할 수 있다면 좋다. 실질적인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마 들은 바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인 호랄도 리베라가 있다. 장발을 한 그가 어떻게 유명하게 되었는지 아나? 그는 뉴욕에서 정신병원시설의 조사를 함으로써 유명하게 되었다. 당시 뉴욕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조건과 중세시대의 시설들이 정신병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밝혀냈던 것이다. 만약 외부의 조사가 없다면 인간의 본성은 성가시고, 다루기 어려운 정신병원 수용자들에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환자치료목적이 예외적이라면 은폐의 유혹이 있을 환자기록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정신병원 시스템에 전혀 관련이 없는 조사자들의 권리로서 외부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것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체계이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미국 등. 이런 어떠한 고립된 시설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폭력의 유혹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내 생각으로,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 세 영역은 매우 시급하게 행정적인 조치, 즉각적인 입법조치등 한국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야 할 영역이다.

(4) Mr. Nigel RODLEY (United Kingdom)

의장님께 감사한다. 질의서의 12, 13, 14번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방금전에 질문을 마친 웨지우드 위원이 제기한 질문들과 실질적으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경로를 통해 질문이 중첩되는 부분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전 위원들이 이미 말했던 한국 정부의 대표단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 이 영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부 보고서에 많은 답변이 있는데 나의 관심 영역은 10개월전인 올 1월에

소개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이다.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고 싶고 한국 정부 혹은 대표단이 참고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통과되지 않을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위원회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계획을 다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획이 실체화 될 때 그 형태와 모양을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표단이 이에 대한 안내를 해 주면 감사하겠다.

나는 고문 혹은 최근의 특정사건에서 고문과 유사한 관행이 있었다는 특정한 주장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고서의 121~122 문단에 있는 사건에 주목한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26일에 조사를 하게 한 고문치사사건이다. 그 사건이 조천훈 사건이라 여겨진다. 피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서 3년 징역형을 받았음에 주목한다. 그들이 어떠한 혐의를 받았으며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3년은 고문치사를 일으킨 사건치고 적은 형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21 문단에 명시되어 있다. 어떻게 그러한 판결이 되었는지, 혐의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참고로 정부의 보고서에서 현재 그 사건은 항소심에 있다고 했다. 항소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피고인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이것은 불처벌의 메시지와 매우 관련이 있다. 고문에 대한 매우 적은 특정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및 위협이 아직 수사관들에 의해 여전히 넓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답변을 듣고 싶다. 어떤 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인가?

12번 질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서면진술서의 17쪽에 정부대표단의 답변으로서 법원에서 피고인의 심문 기록이 사용되는 범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만약 내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것은 오직 법원에서 자백에 대한 개인적으로 사실상의 승인에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대표단이 말한 것은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어떠한 자백이 법원에서 관련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말이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과 그 시스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알려주면 고맙겠다.

13쪽으로 넘어가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있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목록에 대한 정보 제공에 감사한다. 이것은 처음 체포시점부터와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다.

웨이우드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변호인 참여권이 정당한 이유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에서이다: 공범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이유가 새 시스템하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유일의 정당한 이유인가?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는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마도 2002년 송두율사건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건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거부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상반되는 결정이 있었다고 알고있다. 그 사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거부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법에서 거부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인지 알고 싶다.

웨이우드 위원의 우려점에 공감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지어 정당한 이유로

거부된다는 것은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계획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제한을 결정하는가? 경찰 자신인가? 아니면 검사인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하는가? 만약 제한된다면, 보충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보장하는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질의항목 14번과 관련하여, 이는 자유권규약 제9조와 관련한 정보이다. 구금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다. 우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긴급체포의 실제 비율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건수는 많지 않다. 약 8%를 갓 넘는다. 대대수가 현장에서 명백하게 체포되었다. 긴급체포의 비율은 약 6~16%가 된다.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약 25~45% 즉 30~40%가 무혐의로 조건없이 풀려났다. 많은 수의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 긴급체포제도에 대한 정보와 남용되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이 질의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답변을 기대하며 주의를 기울여 주어 감사한다.

(5) Mr. Micheal O'FLAHERTY (Ireland)

대표단을 정중히 환영한다. 이는 정부에서 현저한 대표단을 파견해 주었다. 많은 당사국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좋은 점이라 생각한다. 대표단 구성중에서 특히 각 부에서뿐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 같은 국가위원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국가정책기관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표단 구성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내 동료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사무총장과 인권고등 부판무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씨에 대해 축하드린다.

질의서의 첫 부분에 많은 이슈들에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첫 번째로 유보의 철회문제에 대해서이다. 오늘 우리는 규약 제14조 유보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난 그러한 논의가 규약 제22조에 대해서도 유보의 철회에 대한 논의가 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감사하겠다. 내 생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 토론하기에 적절한 시간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유보에 대한 현재 정책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실제로, 1999년 최종견해에서 당사국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권고를 중요시 한다는 의도인가?

평등과 비차별관련한 문제로 넘어가서, 첫 번째 사항으로 이주노동자고용에관한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그 법에서 금지란, 내가 이해하기로는 “부당한 차별”로 되어있다. 만약 그러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구제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대표단이 말을 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것이 단순히 번역의 문제인가? 몇몇 차별에 대한 가능성 있는 거라면 규약하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두가지의 의무고용규칙이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 동 법의 금지가 정부기관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 실제로, 정부기관에 적용한다면 정부기관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차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17조와 관련하여 이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균형법 제92조에, 내 앞에 있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믿고 있는 자료에서 인용하자면,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실제로 이 조항이 균형법에 정확한 조항인지 정부대표단이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다면, 이 조항 개정에 대한 여부에 관한 정부대표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위원회의 법리학으로 분명히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규약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사안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균형법 제92조에 따라 가정하자면, 아마도 군대에서는 동성애자가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다시한번 대표단이 이것이 오역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면 매우 도움이 되겠다. 만약 오역이라면 동 사안이 규약하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정부대표단은 어느 정도까지 느끼고 있나?

(6) Mr. Abdelfattah AMOR (Tunisia)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동료들과 의장과 함께 나 또한 대표단을 정중히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보고서 발제에 대한 진지함에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부대표단은 유용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4가지 질문을 하겠다.

내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질문이다. 대표단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 고용인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소한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2%에 해당하는가? 이 2%는 장애인들을 위해 확보되어 있는 자리인가? 정부대표단에게 할당문제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을 하고 싶다. 일부 국가에서 점수원이나 전화교환원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해 확보된 특정한 직업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그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 또한 그들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을 고려한 고용교육훈련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사람처럼 같은 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떻게 이러한 통합을 장려하는지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위한 특정화된 센터를 가지고 있는가?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대표단은 강간사건의 20,751건이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확인된 강간사건의 기소된 건수이다. 실질적인 현상의 정도에 대해 알고있나? 약 2만건의 기소가 있었으나 전체 강간사건의 수와 어떤 관련이 있나? 만약 정부대표단이 이것에 대한 추정되는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강간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아 성감별에 대하여, 안도위원이 문제제기한 측면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정부대표단은 태아의 성감별에 근거하여 낙태를 수행한 4명의 의사와 몇몇 간호사를 기소하고 처벌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범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4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벌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범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인상이다. 이것에 대해 대표단이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관련된 질의이다. 나는 한국 당국이 잘 생기고 눈에 띄는 남성을 사는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정신병원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더 취약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요할뿐더러 그러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입원을 하게 되면 극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절대 나오지 못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자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발적인 자의 집에서 그 사람을 돌보는 많은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의 상황을 개선할 다른 방법 혹은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내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느낀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입원과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병원에서 일생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설을 이용가능하지만 아마도 쉽게 이용가능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듯 보인다. 나는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대표단이 추가로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7) Ms. Christine CHANET (Chairperson)

늦어질 것 같으므로 10분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10분 후에 대표단은 오늘 오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가지며, 다른 문제들은 내일 아침에 논의될 것이다.

▷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의장에게 감사한다. 오늘 시간과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제기한 광범위한 질의를 고려하여 바가와티(Mr. Bagawathi)위원과 안도(Mr. Ando)위원의 몇몇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다.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질의는 내일 아침에 답변하겠다.

바가와티(Mr. Bagawathi)위원은 규약을 원용하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물었다. 규약은 단독으로 법원의 결정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에 관련한 조항과 함께

고려된다. 규약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보고서 13과 14항에 언급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와 위원구성에 관하여 답변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은 다양하다. 모든 위원이 정부의 세 개의 기관에서 추천된 인권전문가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수는 4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확한 구조는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권고이다. 질의서의 서면답변서를 보면 알듯이, 정확한 진정 수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매우 진지하게 수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약 70%를 수용하였으며 만약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정부는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 왔다.

유보와 관련하여,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조약국에서 검토단계에 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규약 제14조 유보를 철회를 위한 정부의 결정의 매우 마지막 단계이다. 이 유보는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어떠한 어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하여 내일 아침에 답변하겠다.

안도(Mr. Ando)위원이 제기한 질의에 대하여 몇가지 답변을 하겠다.

안도(Mr. Ando)위원은 아이들의 자신의 성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물었다. 아이들의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결혼전에 부부는 아이의 성을 모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약속 혹은 협정은 결혼시 그들의 신청으로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다. 문서의 형태로 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두 번째는 아이의 행복 혹은 이익을 위하여, 아이, 모 혹은 부가 아이의 성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곧바로 바꿀 수 있다.

안도(Mr. Ando)위원은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인중의 출생자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상속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상속관련 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인중의 출생자 사이의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1977년 민법 개정 후에는 차이나 차별은 폐지되었다. 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인중의 출생자를 이유로 그 지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 안도(Mr. Ando)위원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국제조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다.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모집하기를 원할때, 정부는 어떤 국가의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양해각서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전적인 책임은 송출국 정부에 있는 것이다. 만약 양해각서의 조항을 송출국이 위반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 특정 국가의 노동자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안도(Mr. Ando)위원은 또한 가정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에 관해 물었다. 특히 피해여성의 쉼터의 업무와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부보고서의 79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간략하게 그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와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에 가족에 근거한 쉼터시설을 완비하였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근거로 한 가족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말에 175개의 상담센터와 37곳의 쉼터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까운 시일에 최근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핫 라인 서비스를 개설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핫 라인 서비스와 가정폭력 상담센터의 통계는 정부보고서의 24쪽에 포함되어 있다.

안도(Mr. Ando)위원은 또한 가중폭력 사건에서 34,000건이 혐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대부분이 법원에 의해 보호조치결정의 결과를 이끈 법원의 결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동아디지탈 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서울에서 정보가 입수된다면 내일 세부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의장님, 의장님의 동의와 대표단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늘 회기를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Ms. Christine CHANET (Chairperson):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녁에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정해진 시간내에 정확한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 질의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 질의할 것입니다. 바쁜 업무가 있음에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좋은 저녁시간을 가지길 기원합니다. 회기는 휴회합니다.

10월 26일(목) 10 am, Palais Wilson

10월 25일(수)일에 제기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사숙녀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위원회의 몇 위언들이 어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짧은 답변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답변할 것이고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질문들과 함께 대답할 것이다.

바가와티(Mr. Bhagwati)위원이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위원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의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기하였다.

권고를 이행하는데 방법과 수단사이에 양립하지 않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법의 전제조건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한 사항으로 어제 위원회에 제공했듯이,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많이 국내법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테러방지조치와 특히 세가지 제출된 법안에 관하여, 테러방지에 관한 세가지 법안은 각각 2005년 3월, 7월과 2006년 6월에 제출되었다. 현재 법안들의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고려중에 있다. 제출된 세 개의 테러방지법안으로, 수색, 전화감청, 통신도청과 국외추방은 오직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수행된다.

안도(Mr. Ando)위원은 많은 질의를 하였으며 그 질의에 관한하여서는 정부대표단중 노동부의 김영미 사무관이 대답할 것이다.

▷ 답변: 노동부 김영미 사무관

안도(Mr. Ando)위원은 비정규직이 노동계약의 기간에 의해 구분되는지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해고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현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이 법안에는 그들의 고용지위가 비정규직인지 혹은 정규직인지 고용관계의 기간과 관련하여 기간, 시간 근무, 파견근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안도(Mr. Ando)이 동아 디지털 사건에 대해서 물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하겠다.

질문사항은 동아디지털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유해물질 취급작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었다.

한국정부는 2004년 1월 태국 출신 근로자의 노말핵산 중독사고가 발생한 동아디지털을 조사해서 회사대표와 공장장을 구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였다. 그리고 전국에 모든 노말핵산 취급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산재보험처리하여 1년 6개월동안 치료한 후에 귀국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안도위원의 질문이다.

양성고용평등을 위해서 쿼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데 남녀고용평등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한국정부는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부문 외에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쿼터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에 공기업과 오백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여 여성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안도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성고용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보육에 대한 것이므로 국립 또는 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도(Mr. Ando)위원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종과 국적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그 의미는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인종뿐 아니라 국적으로 인한 출신을 근거로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의미이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다음 질문은 안도(Mr. Ando)위원이 국제결혼으로 출산한 아이의 국적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며 그 답변은 법무부 강지식 검사가 하겠다.

▷ 답변: 법무부 강지식 검사

안도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일방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의무적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과거에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칙적으로 출생한 당시에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모양계 혈통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이 한국인인 경우에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만일 다른 일방의 국적국 법률에 의해서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즉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자녀가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어서, 안도위원이 질문한 배우자 강간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하겠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강간죄의 규정상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고소제한대상이 아니다. 다만, 판례가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배우자 강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배우자 강간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도위원이 질문한 호주제 폐지 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

해서 답변하겠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종전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별로 등록하던 호적제도 대신에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내용을 개인별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서 세 개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데 바르면 금년중에 법률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시 안도위원이 질문한 호주제 폐지 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의견수렴절차를 두차례 걸친 바 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한 바도 있다. 향후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시민단체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안도(Mr. Ando)위원은 한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겠다.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월에 500인이상의 근로자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사업장에 보육시설은 더 확대될 것이다.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였으며 법무부의 이문한 검사가 그리고 주 제네바 대사관의 이상용 참사관이 답변하겠다.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조천훈 사건에 대해 답변하겠다. 그 사건이후, 비록 고문이 일어난 장소에 조사의 감독 검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동의와 부주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최종결정 후 18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고문에 직접 개입한 세명의 수사관들은 2년 6월형에서 2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 답변: 주 제네바 이상용 참사관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과 로들리(Mr. Rodley)위원이 현행 제도상 변호인 참여사유의 제한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사유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물었다.

경찰의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공범도주 혹은

중거인멸등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의 초래가 있는 경우 기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은 피의자 심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과 로들리(Mr. Rodley)위원이 피의자의 체포 혹은 구금시 법관대면권이 언제부터 보장되는지 질의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한국의 체포 및 구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금을 구분하고 있다. 체포에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세가지가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발부하는 것이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중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세가지 체포의 경우 모두, 피의자를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반드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변호인, 가족 등은 체포 혹은 구속 직후 즉시 법원에 체포나 구속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를 받은 즉시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한 다음 체포나 구속의 적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한 이후 구속 사유를 검토한 다음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변호인이나 가족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 직후부터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중 법관이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심문하는 사건이 전체 구속 사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48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된 자의 85%가 구금 이전 법관을 직접 대면하였음을 의미한다.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은 기소 전 구금기간이 일반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로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에 너무 장기간이 아닌 지 물었다.

법관이 피의자의 신청 여부에 의하여 피의자를 직접 대면한 다음,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경찰의 경우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없고, 검찰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이론상으로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총 50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사건은 2002년부터 2006년을 모두 합하여 불과 3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10일을 초과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한 비율이 2001년 9.2%, 2002년 8.0%, 2003년 7.7%, 2004년 9.5%, 2005년 11.0%로서 전체 구속사건에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구속사건의 90%이상의

사건은 20일을 구금기간 이내에 처리되어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로들리(Mr. Rodley)위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데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현재 형사소송법안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작성한 법안이다. 법안의 심의 통과는 국회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행정부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여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로들리(Mr. Rodley)위원이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위협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데에 사실인지 질의하였다.

현행법 제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검찰의 인권관련 수사준칙은 잠 안재우기, 구타위협등은 물론이고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실이 신고된 경우, 이를 내사,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고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이를 감독하며 중요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인권국내에 자기통제적 조사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즉시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등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우위를 인정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배척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이 자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로들리(Mr. Rodley)위원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는 피의자 혹은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혹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기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정에서 피의자 혹은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순히 진술하기만 하면 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거나 왜 사실과 다른지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도 전혀 없다.

로들리(Mr. Rodley)위원이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사과정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 입건당시부터 인정된다고 이해해도 무방한지 물었다.

형사 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지침 및 검찰의 준칙은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최초 입건당시부터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로들리(Mr. Rodley)위원이 전체 체포인원 중,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너무 많은 수를 차지하여 수사기관의 체포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지 물었다.

앞서 말했듯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전부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그 본질상 사전에 법관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며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관이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긴급체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긴급체포의 사용을 엄격히 억제하여 그 사용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체포를 제외한 나머지 체포인원은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인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대검찰청을 통해 정확한 통계수치를 확인하여야 답변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통계를 요청하여 두고 있으나 아직 통보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민변이 제출한 통계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도달하는 대로 서면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한편 긴급체포 인원 중 25~33%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없이 석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피의자를 구금하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도 기준, 미국 연방 법무부 산하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미국의 인구 10만명당 총 체포인원은 4,761.6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200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총 체포인원이 1,332.6명 그 중 48시간을 넘어 구금되는 인원이 129.3명에 불과하여 총 체포인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의장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규율위반과 관련하여 징벌절차의 집행에 대한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의 문제에 대해 답변하겠다. 수용자가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고 그러한 수용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될 때 따라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러한 공권력은 최소범위내에서 적용된다.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 징벌에 관한 정보는 징벌의 적절한 단위를 강구하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징벌위원회에 이관된다. 행형법은 징벌시 계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용자나 그의 가족구성원은 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대해 법무부의 인권국 산하에 설립된 인권침해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다음은 계구사용에 대한 답변이다. 수갑과 같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연령, 성격,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전 기록 그리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등을 고려하여 사용된다. 교정시설에 일치하도록 사고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사용된다. 2004

년 6월 29일, 법무부는 수용자징벌및계구관련규칙을 제정하였고 교도관은 계구사용을 감독하고 그 사용조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계구사용에 대한 조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일선교정기관과 함께 징벌도구사용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며, 교도관이 계구사용의 조건을 검토 및 감독함으로써 엄격한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다. 수용자에 대한 계구의 사용이 7일을 초과할 때는 교도관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그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한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의장님,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은 정신병원에서 인권보호조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정신보건기관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강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미신고시설등에 환자 인권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시도 단위로 인권보호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신고시설, 정신의료기관등 인권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퇴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할 정신보건기관의 지도 감독시 반드시 입퇴원관리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점검하고 위법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기관 운영 회의체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설경영진, 직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웨지우드(Ms. Wedgwood)위원은 정신질환치료에 관한 정보제공활성화문제를 제기하였다.

환자배우자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규정준수여부를 점검한 후에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있다. 만약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소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의장님, 오플레르티(Mr. O'FLAHERTY)위원과 아모르(Mr. Amor)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의 이성용 서기관이 답변할 것이고 다음에는 국방부 이성주 인권팀장이 답변할 것이다.

▷ 답변: 노동부 이성용 서기관

오플레르티(Mr. O'FLAHERTY)위원의 질문은 규약의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교수노조설립과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과 노사정협약(grand

tri-part type agreement)을 올해 9월 11일에 제정하였다. 규약의 제22조 유보의 철회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오픈레르티(Mr. O'FLAHERTY)위원의 견해에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다음은 오픈레르티(Mr. O'FLAHERTY)위원이 질의한 외국인 고용법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 금지 조항에서 부당하다는 것의 의미와 부당한 처우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었다.

외국인 고용법상 외국인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행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벌금 5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오픈레르티(Mr. O'FLAHERTY)위원과 아모르(Mr. Amor)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질문은 장애인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고용제도가 정부기관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위반시 제재에 대한 것, 두 번째 5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수준과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물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애인에 맞는 직무영역이 있는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물었다.

정부기관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민간부문과 같이 고용부담금 부과는 적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정부기관별 장애인 고용율을 조사 공표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전체적인 장애인 고용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2005년 말 기준으로 정부기관 및 50인 이상 기업에 장애인 고용인원은 61,862명이다. 상담부서에 우선 채용을 권장하는 등 장애인 고용증진정책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 걸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지원, 자영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통한 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형법상 계간 처벌조항과 동성애자 군복무에 대하여 대답하겠다. 군형법 제92조에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병영생활에 있어 성적인 측면에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위 처벌 조항은 동성애 행위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병영내 이성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도 징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병사의 경우, 동성애자의 경우에도 입대가 가능하며, 국방부에서는 동성애 병사를 일반병사와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동성애자 관련하여 군 간부에 대한 명백한 지침은 현재 없으며, 구체적인 입장을 수립중에 있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아모르(Mr. Amor)위원이 강간사건의 실제 건수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현재 단계에서, 강간사건의 실제 수는 통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추정할 수 없다.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대표단은 오늘 아침까지 가능한 많은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대표단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

(1) Mr. Nigel RODLEY (United Kingdom)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의장님,

맞는 말이다. 한국대표단은 답변뿐 아니라 늦게까지 고된 작업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사실, 우리가 질의했던 질문에 대해 심지어 더 답변해 주었으며, 질의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짧게 답변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을 물어보고 싶다.

첫째로, 한가지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것은 대표단이 답변했던 것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혹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에서 어느 부서가 변호인의 접근권을 결정하는가? 누가 그 결정을 하는가? 그 결정이 있었을 때 불복할 수 있나? 변호인의 접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보충적인 수단이 있는가?

피의자를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구금된 자가 48시간 이후에 법원에 의한 대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통역을 통해 들었다. 정확한가? 규약의 제9조 3항에 따라 법관과의 대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수사 혹은 기소에 의해 50일까지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구금은 법관이 결정하는게 맞는가? 그 연장은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 둘째, 그 개인의 구금 기간의 연장이 결정되기 전에 그 개인은 법관과 대면하는가? 셋째, 구금시설은 어디에 있나? 경찰서의 유치장인가? 아니면 다른 장소인가?

나의 질의사항은 아니나 우리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답변되었었다. 나는 변호인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허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이 용의자의 초기 체포부터 인지 확실하지 않다. 변호인이 체포시점부터 허용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하여, 자백이 심문조서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심문조서와 관련한 답변은 분명하나 다른 규율에서 이를 다른 자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표단이 자백이 만약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자백에 관한 규율이라면,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나? 자백을 한 개인이 자신의 자백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증명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검사가 증명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였으나 구금시설, 경찰 유치장 혹은 다른 구금의 장소등에서의 독립된 감찰을 언급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하위 체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매우 간략한 평을 하자면, 미국에서의 자유를 박탈한 비율을 비교하였음에 주목한다. 나는 그러한 자유가 박탈된 자의 비율과 관련한 질문과 사건에 대해 세계에서 하나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3~400%이상의 대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다면 우리가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로들리(Mr. Rodley)위원이 제기한 종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네바 이상용 참사관이 답변할 것이다.

▷ 답변: 주 제네바 이상용 참사관

어떠한 당국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경찰수사단계에서는 경찰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제한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불복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항소법원 및 대법원까지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48시간 구금제도 이후 법관대면권과 관련하여서는,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금의 경우 48시간 이전이라도 즉시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또한 48시간 이후 신청된 구속영장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기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가 100% 자동으로 심문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안에서도 당사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나 법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전에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일까지 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질의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10일을 초과하여 구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수사기록을 신청서와 함께 법관에게 송부하여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이 불허될 경우 즉시 구속기간내에 기소하거나 혹은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구금의 장소 관련,

경찰의 구속기간동안에는 경찰서내의 유치장에서 구금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구치소에서 구금되고 있다.

입건 초기부터 변호인 참관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체포시점부터 변호인 참관이 되는지 물었다.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포시점부터 변호인 참여가 허용되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입건직후부터 변호인 참여가 허용된다.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와 관련하여, 피의자 심문조서와 동일한지 다른 규정하에서 규율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자백은 기록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이외에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자백까지도 모두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백의 의미는 피의자 심문 조서에 기재된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자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하였다. 피의자가 법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의심할만한 사유를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다른 국가와의 통계비교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국가의 통계를 쉽게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며, 그와 관련되어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 바란다.

김종훈 정부대표 단장:

질의서의 18번~24번까지에 대해 답변을 계속하겠다.

사생활 및 사상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권리 (17, 18조)

18. 불법적인 도청, 미행, 및 감시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내법상 대화의 감시가 허용되는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청, 감시, 대화의 감시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도청을 비롯해 위에 언급된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할 독립 기구를 창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보고서 251-253항; 이전 최종견해 17항)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적인 도청·미행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전혀 없고 불법적인 도청·미행·감시를 하고 있지 않다.
- 국내법상 대화의 감시가 허용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범죄수사 목적의 통신제한조치는 2개월, 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는 4개월간 허용되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6시간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으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
- 도청 등에 사용되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유통·소지의 허가제나 등록제를 실시,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불법도청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 등 목적의 합법적인 감청도 영장주의를 채택, 수사기관의 자의적 감청을 근절하고 있다.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일정기간마다 감청건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도청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행해지고 있어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9.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감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271-276항). 당사국은 사회 내에서 가능한 군복무의 대체 형태 뿐만 아니라 군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전투 업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의 군 복무는 허용되고 있습니까?

▷ 답변: 국방부 이성주 인권팀장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2000년부터 2006. 6. 30.까지 총 3,665명이 재판받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있고, 병역거부자들 중 약 86%가 실형을 선고받아 대부분 약 1년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수감생활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며, 병역거부 이유는 약 99%가 종교적 양심, 나머지 1%가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연도	총계	징역						집행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기소유예	재판계류중
		계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 1년 6월 이상	1년 6월 ~ 1년 이상	1년 미만	계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 1년 이상	1년 미만				
계	3,655	3,147		20	3,115	11	1	18	1	14	3		2	58	4	426
2006	306	31			31									2		273
2005	828	672		1	667	3	1	2		2				3	1	150
2004	755	739		1	730	8		5		5			2	5	1	3
2003	561	543			543			6	1	3	2			12		
2002	825	794		3	791			4		3	1			25	2	
2001	379	367		14	353			1		1				11		
2000	1	1		1												

- 현재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 또는 군 내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6. 4. 민·관 공동연구위원회(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사회 내의 대체복무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여성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모집병은 18세 이상 28세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으나 여자는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므로 육군병 지원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사병이 아닌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지원에 의해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의 여자생도 숫자는 2006년의 경우 전체의 약 10% 정도이고 2006. 1. 현재 여군의 수는 466명이다.

- 육군사관학교: 1998년부터 여자생도 입교, 06년도 230명 입교자 중 여자생도는 23명, 공군사관학교: 1997년부터 여자생도 입교, 06년도 160명 입교자 중 여자생도는 16명, 해군사관학교: 1999년 여자생도 입교, 06년도 139명 입교자 중 여자생도는 15명)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9조)

20. 규약 19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 더 자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290-297항; 이전 최종견해 9항)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 2000년부터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 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 중에 있다.
- 이는 남북 대치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국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적용 등을 통해 현재는 과거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사례는 없다.

1999년부터 2006년 8월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래와 같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입건	506	286	247	231	163	114	64	37
구속	312	130	126	131	84	38	18	12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21조와 22조)

21. 데모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라고 부를만한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약 집회를 열기 위한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소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진술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306-314항, 이전 최종견해 18항)

▷ 답변: 경찰청 권건아 경위

-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의하여 집회지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만 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규정한 금지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있다.
- '불법집회'는 집시법에 의거,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하거나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또는 집회 중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공공의 안녕 질서 위협'으로 금지되는 시위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과 같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신고한 집회가 '금지통고' 되더라도 불복할 경우에는 금지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차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경찰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금지통고서가 위법하거나 불공평한 결정 혹은 그 효력을 상실했을 때, 이의를 신청한 자는 경찰서에서 통지받은 최초 통지에 따라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금지통고로 인해 집회를 개최하지 못한 때에는 집회일 24시간전에 경찰서장에게 일림으로서 재조정될 수 있다.

22. 공무원의 결사 및 노조결성의 권리에 관한 새 정부 법안의 범위와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새 법안은 어떠한 내용을 보장하며 어떠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기 보고서 315-320 항; 이전 최종견해 19항)

▷ 답변: 노동부 정형우 팀장

- 2005. 1. 2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06. 1. 28.부터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측과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 다만, 행정서비스의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대상조치로서 중립적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어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 노조 가입범위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공무원 신분 및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군인·경찰, 법관 등 사법질서 유지나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적 직책에 있거나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 등은 가입을 제한하였다.

23. 당사국은 이주 노동자들의 결사 및 집회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 답변: 노동부 정형우 팀장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3권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불법 취업자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필요하나,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장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결성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노동자에게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며 집시법상 불법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개

최가 가능하다.

규약과 관련한 정보의 배포 (2조)

24. 위원회의 지난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포함되어 있는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은 대중에게 어떻게 이를 알렸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현 정기 보고서의 제출 및 인권이사회의 심의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 및 NGO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가 국회와 대중들에게 배포되었습니까?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점검을 위해 어떤 매커니즘이 시행되거나 계획 중입니까? (이전 최종견해 23항)

▷ 답변: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

-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제2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게재하고 있으며
- 이번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NGO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반영 가능한 부분은 충실히 반영하였다.
- 최종견해의 후속점검을 위하여 내용별로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추가 질의

(1) Mr. Ivan Shearer (Australia)

처음 발언기회를 가진 나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인상깊은 규모와 신중한 답변에 대해 환영한다. 질의서의 18번에서 21번 그리고 24번에 대해 몇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다.

통신 도청에 관한 18번과 관련하여, 불법 도청에 책임이 있는 자는 어떠한 범주의 사람인지 알고 싶다. 2003년전에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질문은 법에 따라 준수되는 합법적인 전화감청이 있는가? 전화감청에 대한 영장은 누가 발행하는가? 대표단의 답변에 판사라고 하였지만, 전화감청이나 감시에 대한 합법적인 영장을 발행하는 실제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부의 서면답변서에서 불법적인 관행이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감청장비와 전자상가에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최근에는 올해 8월, 한 의원이 상대의원을 전화감청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에 대한 불법 방해를 억제하기 위하 한국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19번 문제에 관하여, 병역의무를 거절한 결과로 수감된 자의 수를 서면 답변서의 25쪽에 친절히 제공된 통계에 주목한다. 이 수용자들이 일반범죄자와

격리되어 수용되는지 알고 싶다. 어떠한 종류의 징역 혹은 징역보다는 더 편안한 형태의 감금인가? 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그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내 질문은 이 검토는 얼마동안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떠하며, 민관연구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위원회는 누구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군대에 여성이 복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 19번과 관련하여, 다시, 약 10%가 여성으로 할당이 보여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그 비율이 정확히 10%이라는 것, 공군사관학교도 정확히 10%,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10%를 갓 넘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여성이 오직 10%로 한다면 실제 할당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또한 여성은 사병(active service)으로 적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역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투병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복무의 종류를 이야기 하는가? 내 질문은 여성이 복무함에 있어서 그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질의서 20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난번에 최종견해를 표명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의 변화를 주목한다. 정부대표단의 답변에서 그 위반사례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단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올해 37건이 존재한다. 특히 올해 5월 26일 한국전쟁에 대한 학문적이며 역사적인 의견을 발표했다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그의 발표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떻게 불법화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27쪽의 표 안에 있는 통계를 보자면, 혐의된자와 체포된자의 통계이다. 번역의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체포된 자는 구속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임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실제로 혐의를 받은 사람의 수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 표 안에 '체포'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

결사의 자유와 시위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21번 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은 위원회가 이전 견해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사항이다.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내가 보고서를 자세히 보았다면 집회 신청에 대한 적은 수의 거절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 증거는 아마도 정부에 의해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 큰 주의점을 가지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법을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집회 허가를 위한 신청을 훨씬 더 꺼린다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우려점은 이 법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집단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어떠한 시위자도 같은 시위에서 한 사람 혹은 다른 이들과 결합하여 일으킨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인가? 예를 들어 올해 열린 농민집회동안 체포된 일부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를 방화하고 경찰에 폭력행위를 했다고 하여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한 의견을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규약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배포 하는지에 대한 관련 질의 24번에 대하여 묻고 싶다.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아침 법무부 박민정 사무관의 답변에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질의를 하고 싶다.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다른 보고서들이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만 웹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고 한다. 내 질문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며 주로 일반 국민의 소수가 이 보고서와 그 최종견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정부대표단 답변의 마지막 문항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자료를 국문 번역에 긴급한 주의를 기울이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정부대표단장은 어제 서두 발언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비정부단체들과 협의하였다고 하였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체들과 협의하였나? 단체들을 일반적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견해를 들었나? 아니면 일부의 몇몇 단체들을 선택하였나? 이것이 추가 질의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2) Mr. Hipolito Solari Yrigoyen(Argentin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서 질의하겠다.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알고 있는가? 이는 규약의 제18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논쟁 또한 없다. 누가 감금되는가?

두 번째, 이들은 사면을 받나?

세 번째, 이들의 출소후에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제한받나? 이들은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네 번째, 예비군이 양심에 따른 거부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

다섯 번째, 대체복무제도 관련 언제 입법화할 예정인가?

(3) Mr. Michael O'Flaherty (Ireland)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유용하고 유익하게 답변을 해 준 대표단에 감사한다. 나는 규약 제22조가 검토중에 있다는 점에 특히 더 기쁘게 생각한다.

쉐어러(Mr. Shearer)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규약 제22조와 집회의 자유관련 두가지 질의를 하겠다. 집회와 시위에 관련한 법의 적용에 대한 다른 문제들도 있나? 우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집회의 허가를 거절하는 것은 경찰제도내에서 상급 경찰기관 혹은 상급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으로도 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체계는 경찰내에서 내린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ILO에서 계속해서 한국정부에게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인정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받았는데 올해 9월 22일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의 81~100여 곳의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면 고맙겠고 어떠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인 질의서 22번과 관련하여,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의 소식에 환영한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그 요소에 대해서 통역을 듣는 동안, 실제로 정부대표단의 서면답변서에서도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 같다. 이러한 제한과 다른 많은 제한들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규약 제22조하에서 우려점이 된다. 나는 특히 노조의 권리 즉 6급 이상 공무원들의 노동 결사의 자유가 어떠한지 알고 싶다. 다른 배제되는 범주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법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안으로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공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이슈인 질의서 23번의 문제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으로 이주자들의 정치활동의 금지가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듣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자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약 그러하다면,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인정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서 정부대표단이 알려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

▷ 질의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 ◁

김종훈 대표단장:

쉐어러(Mr. Shearer)위원이 제기한 질문은 법무부 이문한 검사가 답변하겠다.

▷ 답변: 법무부 이문한 검사

쉐어위원은 2002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사건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기소되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02년 3월까지 불법도청팀을 구성해서 불법적으로 감청을 해 온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두 국정원장이 2006년 불법감청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실무감청 실무자들도 두 명이 기소되었다. 그 중 일부는 현재 재판중이며, 또 일부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두번째 질문은 합법적인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지 물었다.

합법적인 감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법관에 신청하여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을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 질문은 한국의 시중에서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쉽게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규율하고 사용자를 처벌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유통에 관해서는 철저한 통제와 허가 등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일정한 규율과 허가를 위반해서 일반인이 불법감청을 하는 경우에도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비를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쉐어 위원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번째 질문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련한 질문이었다. 강정구 교수는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언론매체에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 전쟁이며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던 사회공산주의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였다. 강정구 교수는 위 내용으로 인해서 2005년 12월 23일 기소되었고 2006년 5월 26일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서는 학문과 사상의 제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도 순수한 내심의 의식단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정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사회단체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수년간 학문과 사상의 자유영역을 벗어난 글을 게재하여 왔다. 그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도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두번째 질문은 list of issue 20번의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표상의 입건과 구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다. 통계표상은 지금 입건과 체포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영문번역상의 혼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궁금증이라 생각한다. Charge는 입건이고, arrested라고 되어 있는 통계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건된 사람의 수보다 구속된 사람의 수의 통계가 적은 것이다. 이상이다.

김종훈 대표단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이성주 팀장이 답변하겠다.

▷ 답변: 국방부 이성주 팀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에 관해 말하겠다. 먼저 대답하기 전에 한국은 과거 625전에 의한 동족간의 비극이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의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먼저 징병제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체복무제도연구회의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2007년 6월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의 구성위원은 민간위원으로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위원, 종교단체로서 목사, 신부, 스님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로서 병무청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의 상급기관 및 보고기관은 국방부장관이다.

여성군복무 쿼터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사관학교생도중 10%를 여성으로 뽑는 것은 법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역 입영대상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우에는 군입대가 의무적인 의미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군에서 복무하는 여군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물론 전통적으로 해왔던 간호, 헌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여군장교 내지 하사관이 전투비행사, 해군함정에 승선하고 있고 육군의 경우 보병지휘관으로 배치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여성이 배치되는 병과는 그리 제한이 없으며 극히 일부에 한하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수사초기단계부터,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된 경우 일반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처우를 받으며, 대부분 초범이므로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전과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전과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자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내의 취업시 일반전과자와 동일하게 처우될 가능성이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하면, 역시 처벌받는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연구시한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까지 인데 지금까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은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2-3명 초청하여 진술을 청취한 바 있고, 2)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찬반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3) 최근에는 양심적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갤럽에 의한 여론조사활동을 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도도입여부는 검토중이라는 것 밖에 대답할 수 없다.

김종훈 대표단장:

쉐어러(Mr. Shearer)위원은 또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의 공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최종견해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은 영문본뿐 아니라 국문본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회기 이후부터는, 이 회기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한 이후부터는, 우리,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종견해의 영문본과 국문본을 게재할 것이다.

쉐어러(Mr. Shearer)위원은 또한 정부보고서 준비과정에서 비정부단체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보고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비정부단체의 어떠한 견해와 평가를 받기에 개방된다. 그러나 미래에 정부보고서의 초안을 마련했을 때 한국 정부는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정부관료들이 참여하는 공개된 포럼에서 토론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표현된 견해는 한국정부의 최종보고서에 정당하게 수용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이성주 팀장이 전체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한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포함한 징병제 문제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대표적이고 민감한 사안중의 하나이다. 심지어 고위공직자도 자신의 병역기록 혹은 병역 면제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이다. 장관 임명이나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을 때에서 자신의 병역기록뿐 아니라 아들들의 병역기록은 국회의원들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의미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사안은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누가 면제될 수 있고 혹은 누가 다른 징집자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느냐 라는 특혜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하여 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채택하려고 마음을 터놓으려해도 한국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 여론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추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 사안에 대하여 한국에서 어떠한 적절하고 합의가 가능한 방법을 도출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바이다.

솔라리(Mr. Solari)위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국방부 이성주 팀장이 답변한 것으로 믿는다.

오픈레러티(Mr. O'FLAHERTY)위원이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특히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행자부의 이재용 팀장이 답변하였다.

▷ 답변: 행자부 이재용 팀장

로들리 위원님이 KGEU를 합법단체로 왜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하였다.

우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KGEU는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3년 3월에 불법으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이후에도 KGEU는 공무원 노조법을 부인하고 계속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선거 관여행위, FTA 체결 반대 운동, 미군시설이전반대등 반정부정책 시위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한편 KGEU는 민간기업노조를 비유해서 자신들을 법의 노조로 주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은 민간인과 달리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노조라는 개념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합법 노조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금년 9월달에 있었던 KGEU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서 물었다.

먼저 공무원 단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KGEU는 전체 가입 공무원 28만명 중에서 27%인 76,000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불법단체인 KGEU가 계속적으로 실정법을 부인하면서 집단행동을 해오고 있는 것은 금년 초에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어 모처럼만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안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교섭하는 건전한 노사관

계를 흐트릴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사실 KGEU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은 당초 각 자치단체가 합법단체였던 직장 협의회에 제공했던 사무실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불법단체인 KGEU가 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이 아닌자가 이 사무실에 매일 거주하면서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각종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주도해 왔다. 이에 각 자치단체의 장의 경우는 처음 시작 부분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이들 단체의 불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면서부터 사무실 폐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스스로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불응한 사무실에 대해서만 각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폐쇄를 단행했던 것이다. 현재 58개의 합법 노조가 정부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신청해 오고 있다. 정부는 합법노조에 대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이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반면에 법을 어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정립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김종훈 대표단장:

고위 공직자들의 노조 가입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는 노동부의 정형우 팀장이 답변하겠다.

▷ 답변: 노동부 정형우 팀장

공무원의 노조결성의 권리는 현재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위치, 주요 정책결정 활동 하위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매우 위계적인 한국의 공무원 체계를 고려할 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배제되었다. 우리는 또한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노조 결성을 허용하라는 ILO 권고를 고려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고려점은 현재 실행중(in acting)인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을 공무원 사업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ILO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것은 그들의 결사를 허용할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김종훈 대표단장:

이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위해 한가지 더 정보를 덧붙이자면, 여기에 있는 한국 대표단 모든 구성원들이 5급이거나 그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노조가입에 자격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위자 체포에 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권근아 경위가 답변하겠다.

▷ 답변: 경찰청 권근아 경위

공모공동정범에 기초하여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회시위사건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따른다 하더라도 폭력행위와 전혀 무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집회시위현장에서 직접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과 그러한 폭력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 및 조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대표단장:

오플레리티(Mr. O'FLAHERTY)위원은 또한 집회 신고의 금지 통보가 되는지, 사람들이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답변은 '그렇다'이다. 그들은 이 사안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법무부의 김병철 사무관이 답변하였다.

▷ 답변: 법무부 김병철 사무관

외국인의 정치활동금지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대해 말하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당해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국가통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등 참정권을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가의 국민에 한정된다. 출입국 관리법 제17조 제2항 정치활동 금지규정은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김종훈 대표단장:

오늘 아침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한 질의에 대하여 모두 답변한 것 같다. 한가지 더 답변을 덧붙이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23일 혹은 25일 서울지역 노동사무소는 2005년 5월 3일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이주노동조인정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를 거절하였다. 이 단체가 노동조합설립에 자격이 없는 미등록 불법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단체는 노동법하에서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더구나, 법원은 그 처분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 한국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엄격히 제한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근무 조건을 보호하는 고용을 이유로 하는 불법 외국인은 정당하며, 불법 외국인은 노동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노동법 조항은 규정한다.

김종훈 대표단장:

이 답변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다.

(4) Mr. Micheal O'FLAHERTY (Ireland)

매우 짧게 하겠다. 답변은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하여 대안적인 답변을 하고 싶다. 대표단은 그 속에 관계된 상황을 답변하기 위해서 국가주권을 원용했다. 정부대표단은 비자발적으로 떠맡게 된 그러한 조약의 의무라고 가정하여 국가주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나의 의견에 정부대표단이 동의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규약의 제25조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공무담임권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그것은 단순히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당사국의 관할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향유되는 권리이다. 정부의 답변이 일반적으로 유용하나 나는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해야겠다. 아마도 내 자신과 정부대표단 사이에 약간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정부대표단의 발언은 한 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오히려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함을 이유로 강제추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종훈 대표단장: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짧게 답변하겠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특정단체의 경우 자신의 본국에 정치인권상황개선을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자신의 본국대사관 앞에서 행하는 사례도 있다. 아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국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행위와 관련한 의견개진 또는 활동을 금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만약 이주노동자단체들이 본인들의 복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견해표명은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Ms. Christine CHANET (Chairperson):

이번 제 3차 정기보고서 심의에 기꺼이 참석해 준 대표단장과 정부대표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대표단의 답변은 매우 간결하고 불필요한 답변은 없었으나 가끔 일부 답변을 회피한다는 인상도 주었지만 총론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답변에 대해 추가 정보 제공을 원한다면 3일내로 제공하면 되겠다.

가장 먼저 '호주제'라는 관념을 바꾼 것을 보면 부모의 의무에 있어서 더욱 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간 것 같다. 아이들의 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는 모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NGO가 정부대표단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위원회와 우리의 최종견해를 정부대표단이 배포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유보 철회에 대한 언급은 약간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어떤 유보를 급히 철회하는 것이 처

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정부가 제14조 5항에 대한 유보를 그리 유용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통보 결정의 이중적인 지위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폐지 및 보류되고 제14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제22조는 이보다 더 불명확한 것 같다. 아무튼 위원회가 그 현상만을 고려한다면, 유보의 철회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법원에서 협약의 적용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간결한 답변은 협약이 헌법에 참작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에서 협약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내법을 평등하게 만드는 이 협약이 정상적인 방법일 수 없다는, 아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회의 기존 입장이었다. 법원에서 협약이 적용된 경우를 하나도 예로 들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개인통보의 이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위원회에서는 여러 건의 개인통보가 있었는데 이 중 국가보안법에 관한 것들은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정부 대표단이 우리에게 관련 통계를 제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발전시켜야 했다. 제출된 통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반, 진정관련 부분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정부 수용율이 97.9%나 된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은 합의권고까지 포함한 것이지만 378건의 권고중에서 131건은 심사 중인 사건의 수이다. 그러므로 97.9%의 수치는 수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인권침해 위반에 대해 명백하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법률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계속 심사 중인 사건의 수를 나타낸다.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 자주 질의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원칙과 제한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사관의 판단에 맡겨졌을 때, 임의적인 제한을 피하게 하기 위한 문서화된 원칙이 없다. 이 부분들은 아직 불분명하다.

계속하여,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라고 여겨지는 독방구금에 대하여, 정부 대표단은 매우 엄격한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여기에는 '지시(instruction)'가 아닌 '규정(rule)'의 방식으로 내려져야 하며 이 규정은 행정적인 조치 및 해결이 아닌, 독립적인 조치 및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문서화 되어야 한다.

구속 전 구금의 기간에 대하여 말하겠다. 10일, 또 10일씩 해서 50일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간이다. 긴급체포의 남용도 비판 받았는데, 한국 정부의 새로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한다면 이것들이 위원회의 권고이다.

테러에 대한 정의도 듣지 못하였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물어본 질문 중 하나였다. 제공된 정보에 테러 단체는 UN이 지목한 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UN이 지목한 테러단체조차 불분

명하다.

언급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겠다.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대표단은 위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알려주었고 또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전혀 남용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대표단이 제공한 자료에 보면, 강 교수의 경우 규약의 제19조에 적합해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치, 즉, 단지 강 교수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허튼 소리를 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로 징역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집행유예이지만 그가 계속 자신의 생각을 선전한다면 다음 번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진실과 자신의 정치에 반대되는 주장에 맞서는데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다른 답변, 즉 감옥징역이 아닌 적합한 답변을 잘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그 시행에 남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것이 개인통보에 대한, 특히 통보번호 926/2000에 위원회의 견해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 같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원회의 견해가 이전 견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심의 받기 위해 노력한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종 결론을 위한 정부 대표단의 발언을 부탁한다.

김종훈 대표단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간략하게 마지막 발언을 하겠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국대표단을 대신해 이 심의 기간동안에 견해와 논평을 해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어제와 오늘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는 한국정부가 인권 정책과 실천을 이행을 돕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999년의 제2차 정기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는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는 형사절차, 수용자 처우, 남녀평등, 결사의 권리, 외국인에 관한 정책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개선을 실시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 이 위엄있는 기구의 위원들에게 한국 정부가 취한 이 변화에 대해 위원들의 인정과 평론에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 변화의 고안함에 있어 2차 심의시 위원회의 제안이 매우 귀중한 기준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정부의 정책과 실천에도 대한 이번 3차 심의시에도 위원회의 제안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미래 정책을 세우는데 반영될 것이다.

의장님,

이 심의의 준비 과정은 한국정부가 경계를 넘어 시민적 정치적권리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관행과 법률을 스스로 관찰 및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더구나,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인 여기에 참석한 다양한 각 부의 대표들은 이틀동안 다양한 관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졌다. 나는 이 회의에서 우리의 대규모 대표가 한층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믿는다. 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가 한국정부에 의해 철저히 재고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국정부는 국내 인권의 개선과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제 공동체와 그 협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나는 이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노력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위원회와 한국정부간에 인권분야에 있어서 상호간 밀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